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972
----------	------

2017년 9월1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6. 7.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7. 6. 8.
3. 상정일자 :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 9월 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시민건강국장 나백주)

1. 제안이유

- 가. 상위법령 일부 개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원 구성기관 명칭 변경(제2조)
- 나.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 (제4조)
-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 정비 및 부칙에 경과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함
- 나.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원 임명 규정에 대해 상위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시·도 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시 조례 제4조(위원장)에는 “위원장은 보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바로잡고자 함
- 다.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및 기 구성된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17년 12월)후 2018년 1월1일부터 시 조례 개정안 시행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 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 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해당 없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5)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 없음

(6)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7.5.18. ~6.7.) 결과 :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등 자료 : 별첨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의 취지 및 현황

-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체계 정당성의 원칙에 따라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 정비 및 부칙에 경과 규정 신설하는 개정안임.
 - 구체적으로 상위법령과 다른 용어의 사용(제2조) 및 상위법령과의 규정 불일치(제4조)를 수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개정안에 대한 평가

- 지역응급의료위원회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임.
- 동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명칭을 개정하고 일부 한자어를 수정하여 시민이 법안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안으로 정책적 변화를 수반하는 안은 아니라고 하겠음.
- 그러나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일부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변화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가. 시도응급위원회의 개최횟수 문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제3항은 시·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고 하여 2회 이상의 개최의무를 위원회에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집행부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5년 1회, 2016년 3회, 2017년 9월 현재 1회로 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하다 하겠음.
- 형식적인 회의를 지양하고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2016년 3월 1회차 회의에서 지역응급의료계획의 실행계획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2016년 5월에 열린 2회차 회의에서 같은 계획의 시행계획을 심의한 바, 당해 연도의 계획임을 감안할 때, 시기상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음.

<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개최

연도	회차	주요 내용
2015	1	2015 서울시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안) 보고
2016	1	지역응급위원회 위원 위촉 및 부위원장 선출 2015년 응급의료사업 추진현황 보고
	2	2016년 지역응급의료계획 실행계획 심의 통과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신청 심의 통과
	3	2016-2020 지역응급의료 증장기 계획 검토 시민공감 응급실 서비스 디자인 사업 보고
2017	1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원안심의 서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 사업범위 안내 등 협조 요청

나. 운영 적법성의 문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은 시도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식에 대하여 다루고 있음. 이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 현행 조례는 위원장은 보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인 바, ‘법 우위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겠음.
- 개정안은 ‘법 우위의 원칙’과 ‘법령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음.

<표> 법률과 현행조례, 개정안 사이의 비교

법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제7조제2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보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3 종합의견

- 상위법에 맞추어 적법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본 안건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72
----------	------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과 다르게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하여 바로 잡아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운영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일부 개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원 구성기관 명칭 변경(제2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함('15.1.28.)

나.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제4조)

-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원 임명 규정에 대해 상위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시·도 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 시 조례 제4조(위원장)에는 “위원장은 보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규정

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바로잡고자 함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 정비 및 부칙에 경과 규정 신설

○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및 기 구성된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17년 12월)후 2018년 1월1일부터 시 조례 개정안 시행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 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 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해당 없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5)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 없음
- (6)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17.5.18. ~6.7.) 결과 :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등 자료 : 별첨

※ 작성자 :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관리팀 이순우(☎ 02-2133-7537)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 중 “위촉직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직위원”을 “임명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위원장)”을 “(위원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은 보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를 “위원장 및”으로, “호선한다”를 “시장이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 <u>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생략)</p> <p>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른 <u>응급의료정보센터</u>를 대표하는 자 1명</p> <p>3. ~ 5. (생략)</p> <p>제3조(위원의 임기) <u>위촉직위원</u>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u>임명직위원</u>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제4조(위원장) ① <u>위원장은 보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u>,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한다</u>.</p> <p>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u>통할한다</u>.</p> <p>③ (생략)</p>	<p>제2조(구성) ① <u>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u>----- ----- -----.</p> <p>②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응급의료지원센터</u>----- -----</p> <p>3. ~ 5. (현행과 같음)</p> <p>제3조(위원의 임기) <u>위촉직 위원</u>----- ----- <u>임명직 위원</u>----- ----- -----.</p> <p>제4조(<u>위원장 등</u>) ① <u>위원장 및</u> - -- <u>시장이 임명한다</u>.</p> <p>② ----- ----- <u>총괄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상위법에 적합하게 의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세입 및 세출에 미치는 요인 없음

4. 작성자

: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기술5급 이순우(☎ 02-2133-7537)